적립식예수금약관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5조(비과세종합저축 거래) ① (생 략) ② 비과세종합저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. 1.~7. (생 략) ③ ~⑨ (생 략)	제5조(비과세종합저축 거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거주자(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)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―. 1.~7. (현행과 같음) ③ ~⑨ (현행과 같음)	